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보고서

2024. 12. 18.



의회운영위원회

#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7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3호
- 발 의 일: 2024년 12월 4일
-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12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4일
- 상정 및 의결: 2024년 12월 12일

## 2. 제안사유

- 세수 결손으로 인해 향후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달성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작성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비용추계제도는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은 없었음.
- 광역의회(10) 및 기초의회(35)도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임.

※ 자치단체 현황

구 분	자 치 단 체	비 고
광역의회(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제주	
기초의회(35)	금정, 사하, 부산 중구, 달서구, 인천서구, 광주 북구, 울주, 남양주, 안양, 평택, 화성, 강릉, 고성, 삼척, 원주, 평창, 홍천, 횡성, 보은, 예산, 홍성, 군산, 완주, 장수, 전주, 곡성, 담양, 순천, 완도, 경산, 영주, 거창, 김해, 사천, 진주	

○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과 입법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달성군수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보다 그 범위를 완화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달성군수 의안 발의시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생략 가능

- 안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결과,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비용추계는 의안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였고,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작성절차 등)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제출·발의자가 작성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안의 제출·발의자인 의원 등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재정 수요의 증가와 범 국가적인 재정 위기 상황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함으로써 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달성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달성군의회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4호
- 발 의 일: 2024년 12월 4일
-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2024년 12월 12일

## 2. 제안사유

-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달성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개최 신청 기한(30일) 변경(안 제4조제1항)
- 신청 통보 기한(토요일·공휴일 제외한 5일 이내) 변경(안 제4조제2항)
- 수당 등 지급근거 구체화(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달성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토론회 등 실무에 필요한 기간이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30일 전까지로 연장하였음.
  - ※ 사례: 30일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 전남 광양시
- 토론회 승인 통보 기한도 최종결재권자 일정 등을 고려해 7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를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로 변경하였음.
  - ※ 사례: 7일 -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경기 성남·양주·하남시  
5일(토·공휴일 제외) - 서울 강남구
-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중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섭외 시 수당·교통비 지급 문제 및 그에 따른 섭외의 어려움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범위를 달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책토론회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토론회 등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통해 충실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5호
- 발 의 일: 2024년 12월 4일
- 발 의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2024년 12월 12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생산·제공하는 의정 정보를 달성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달성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활동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정 홍보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정 홍보 사업과 홍보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홍보매체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제12조)
- 자료·개인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3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생산·제공하는 의정 정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명문규정 없이 시행한 달성군의회 각종 의정 홍보활동을 명문화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홍보활동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정 활동 및 공공정보를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의정 홍보의 원칙 ▲의정 홍보 사업 ▲소식지 발행 ▲의정 정보 콘텐츠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의회와 군민과의 상호소통의 장을 넓히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라 사료됨.

※ 전국 조례제정 내역

( '24. 11월 기준)

제정연도	의 회 명	의회수
계		47
2024	경기시흥, 대구달서, 대전유성, 성남, 창원, 용진, 원주 부산북구, 진주, 전북, 안성, 김포, 화천, 이천	14
2023	서울노원, 파주, 하남, 경기, 양평, 경남, 함양, 군포, 대전 중구, 인천계양, 거제, 논산, 진천, 광주동구, 김천, 사천 나주, 대전대덕, 영천, 인천, 안양, 전남, 평택	23
2022	김제, 철원, 무안, 천안, 광양, 의성	6
2021	부산, 부산동래, 완주, 양주	4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